

하나은행 선정 우수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위한

프랜차이즈 가맹점 대출

(기준일자: 2023.5.9 현)

대출대상	가맹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		
대출한도	구 분	대출한도	대출한도의 산정
	창업자금	최대 2억원	[임차보증금+ 인테리어 비용+ 기기구입비 등]의 1/3이내
	운영자금	최대 2억원	4개월간 매출액 합계액 이내
대출금리 (연이율)	변동금리 최저 연 5.770% ~ 최고 연 11.440% [2023.05.09 기준금리(91일물 CD유통수익률) 3.550% + 가산금리 (최저)3.700%, (최고)7.890% - 부수거래 감면 등 우대금리 1.480% 감면 적용 기준]** 이자 산정방법 : 최저이율[기준금리+ 가산금리(ASS 1등급 기준)-우대금리] / 최고이율[기준금리+ 가산금리(ASS 10등급 기준)] * 상기 산정 금리는 대출금액 5천만원, 대출기간 1년, 당행 내부 신용(ASS) 최저 1등급/최고 10등급, 일시상환, 운전자금 기준입니다. * 가산금리는 신용등급, 대출금액, 담보종류, 시설자금대출 취급여부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, 당행 기업여신 금리가이드라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 * 부수거래감면 등 우대금리 : 주거대출 0.1%, 사업자주거대출우대통장 월평잔 조건 0.1%, 금융연수원 금융교육이수 0.1%,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이수 0.2%, 본부 감면 0.98% 등 거래실적 종류에 따라 우대 * 연체대출금리는 적용금리+3.0%과 연 15.0%중 낮은 금리를 적용합니다. * 이자의 부과시기 : 후취방식 장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 단위로 징수합니다. *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%입니다. * 상기 대출금리는 기준일 현재의 적용금리이며 기준금리 변동시 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.)		
상환방식/기간	· 만기일시상환(개별대출,통장대출) : 1년 이내 · 분할상환 : 3년 이내		
담보	신용 (단, 차주현황 및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적담보 취득 등 채권보전 조치 취할 수 있습니다.)		
중도상환해약금	중도상환금액 × 중도상환해약금률(고정금리대출 1.1%, 변동금리대출 1.0%) × (대출잔여일수 ÷ 대출기간) * 단, 통장대출과 대출 취급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였거나, 대출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면제됩니다.		
수수료	통장대출 취급시, ①한도약정수수료 혹은 ②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가 부과됩니다 ①산식: 한도약정액 X 한도약정수수료율(0.3%) X 약정기간 ÷ 365일(윤년 366일) ②산식: (약정한도평잔 - 운용기간 중 여신평잔) x 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율(0.5%) x 운용기간 ÷ 365일(윤년은 366일)		
대출부대비용	인지세 :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시 손님 및 은행 각각 50% 부담 (손님 부담금 예시 :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: 없음 / 5천만원 초과~ 1억원 이하 : 3만5천원 / 1억원 초과~2억원 이하 : 7만5천원)		
필요서류	가맹점 계약서, 사업장 임대차계약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, 신분증,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(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시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.)		
필수조건	1 개 이상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매출대금 수령계좌를 당행으로 지정		

남서울지점

Tel 02-540-1111 FAX수신거부 080-090-

1111

[준법감사인 제2023-광고-03435호(2023.05.19) / CC브랜드230522-

금리인하요구권	- 기업신용평가 등에 따라 고객의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 -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 (아래 조건 모두 충족) ① 기업 신용평가 등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기업대출 ② 회사채 등급상승, 재무상태 개선(감사보고서 등), 특허취득, 담보 제공 등으로 인해 신용등급에 변동이 있는 경우 - 신청방법: 해당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지참하시고 대출계좌를 관리하는 해당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. - 신청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통보해 드립니다. [통보방법: 전화, SMS, 이메일 등] -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대출계약철회권	-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(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)까지 은행에 서면, 전화,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,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 -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: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, 신규대출·만기연장 거절, 대출한도 축소,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위법계약해지권	-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, 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, '법위반사실을 안 날'부터 1년 (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함)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-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,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.
유의사항	- 은행의 정책 및 시장금리 상황에 따라 금리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. - 고객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-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, 대출만기 도래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이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되므로 채무자의 재산/신용상의 불이익(압류, 경매 등)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※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※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 ※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 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. ※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 ※ 대출원리금 연체시 계약만료기한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. ※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(www.kebhana.com)를 참조하시거나, 하나은행 고객센터(1599-2222)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